

【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】

1. 개요

해외현지기업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(법인세법 제121조의 2,3)

① 해외직접투자의 명세

②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현지법인의 재무상황 (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)

③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 (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)

④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 (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)

⑤ 해외 영업소 설치현황표

⑥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⑦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료

2. 제출의무자 : 신고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

① 해외직접투자자 : 「외국환거래법」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 투자한 거주자 (외국법인 지분 10% 이상 소유 & 투자금액 1억원 이상, 외국 법인의 지분 10%이상 직·간접 소유 &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 관계인 자)

②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 : 「외국환거래법」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에 관하여 투자운용(임대)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

3. 제출대상 자료

① 해외직접투자자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손실거래명세서,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

② 해외부동산 취득·운용자 :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4.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

(과태료 부과)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,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와 미(거짓)제출한 자 중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(보완)요구기한까지 미(거짓)제출한 자에 대해 각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

【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】

◎ (대상자)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

자료제출 대상자	제출서류
가.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(대부투자 포함)한 거주자	①
나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거주자	①,②
다. 위 “가” 투자자 중 출자지분 10%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	
라. 위 “다” 투자자 중 손실거래금액*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	①,②,③

손실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	
마.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, 개인사업체,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에 투자한 거주자	④
바.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사. 해외부동산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(임대포함)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	⑤

《제출서류 목록》

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,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, ③ 손실거래*명세서, ④ 해외
 영업소 설치현황표, ⑤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(임대)명세서

⇒ ‘손실거래금액*

「소득세법」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
 단일 과세기간에 10억 원 이상이거나,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
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[특

정 자산 매입처분, 부채 인식.평가.상환 및 증자 등과 관련된 손실금액 (일반적인
상거래의 손실 제외)]

북경 국연컨설팅은 1998년 설립된 이래 약 19여년 동안오직 한국인, 한국기업
고객만을 위해 법률컨설팅 한 분야만을 걸어 왔으며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 자문
및 대행, 지식재산권, 기업법무, M&A, 송무, 청산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
있습니다.